

부산지방법원 2019. 5. 3 선고 2019가단636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판 결 선 고 2019. 5. 3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6. 4.8. 접수 제17676호로 마친 지분전부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저나호, 제257조)

판사 이동기

별지